

한국정보과학회 지부설치 규정

제 1 조 (목 적)

본 규정은 학회 정관 제5조 및 운영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부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임 무)

지부는 학회정관에 규정한 사업목적에 따라 학술교류 및 회원간의 친목도모에 있다.

제 3 조 (설 치)

1. 해당지부 관할지역의 거주하는 정회원 20인 이상으로 지부를 구성할 수 있다. 단, 해외지부의 경우에 상임회장단회의의 결의에 따라 회원 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
2. 회장은 요건을 구비하여 지부설치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할 수 있다.

제 4 조 (회원자격)

지부회원은 한국정보과학회 회원으로서 해당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둔 자로 한다.

제 5 조 (기 구)

지부는 원활한 회무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.

1. 총 회
2. 운영위원회

제 6 조 (총 회)

1. 총회는 지부의 최고 의결기구이다.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총회는 지부장이 소집할 수 있다.
2. 총회의 의장은 지부장이 겸한다.

제 7 조 (임원구성 및 직무)

1. 지부임원은 학회 정회원인 지부 회원으로 한다.
2. 지부장 1인, 부지부장 2인, 감사 2인, 지부이사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. 단, 해외지부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3.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며, 지부업무를 총괄한다.
4. 부지부장은 지부장을 보좌하며, 지부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5. 지부이사는 임명된 직분을 수행하며 지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직무를 처리한다.

제 8 조 (임원선출)

1. 지부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, 그 방법은 출석회원의 과반수 득표로 결정한다.
2. 기타 임원은 지부장이 임명하고 총회에서 승인한다.

제 9 조 (임 기)

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단, 지부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제10 조(사 업)

지부장은 본규정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간 사업계획 및 실적과 예산결산을 정기총회를 거쳐 회장의 승인을 얻어 수행해야 한다.

제 11 조(재 정)

지부재정은 본회운영규칙에 규정된 자원과 본회에서 승인된 지부사업의 수입금과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.

제 12 조(사업보고)

지부장은 본회 총회 전 이사회에 연간 활동사항(계획실적) 및 경비수지(예산결산)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13 조(회칙제정)

각 지부의 회칙은 별도 제정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제 14조(해 산)

1. 지부의 해산은 총회에서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할 수 있으며, 지부장은 즉시 이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2. 회장은 지부 활동이 부진하거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였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 해산 시킬 수 있다.

부칙

1. 이 규정은 이사회에 결의 된 날(1987년 7월 21일)로부터 시행한다.
2. 이 규정은 이사회에 결의 된 날(2005년 10 월 7일)로부터 시행한다.
3. 이 규정은 이사회에 결의 된 날(2010년 6월 17일)로부터 시행한다.
4. 이 규정은 이사회에 결의 된 날(2016년 6월 9일)로부터 시행한다.
5. 이 규정은 이사회에 결의 된 날(2016년 12월 2일)로부터 시행한다.